

의안번호	
의 퇴 인	추경호 의원
회 답 일	2025.5.8.
추계번호	25B27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u>특정 직무 또는 부서 단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직무별 근로자대표”라 한다)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1항)	재량·의무규정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u>직무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u> 이에 따름(제2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u>직무별 근로자대표</u> 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u>직무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u>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함(제4항)	재량·의무규정
2	안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u>직무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년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u>직무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u> 이에 따른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업무량 폭증, 생산성 혁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할 수 있음.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제4항)	재량·의무규정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7항) 1.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주 단위로 1일 이상의 연속휴식을 보장할 것 3.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법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8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1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미대상 － 「근로기준법」 제50조¹⁾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²⁾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과 연동하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여 1주간 40시간, 특정 주 52시간(2주 단위는 1주 최대 48시간), 특정 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며³⁾,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정 직무 또는 부서 단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미대상 - 현행법은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특정 직무 또는 부서 단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에 대한 업종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괄 1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미대상(제4항)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⁵⁾ 사용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하고 있음 -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기준을 “업무량 폭증,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생산성 혁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특별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임 － 즉,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미대상(제7항)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특별연장근로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검진의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⁶⁾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므로⁷⁾,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미첨부(제8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

- 1)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법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서면 합의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각 근로일 및 각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4)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 7)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주 단위로 1일 이상의 연속휴식을 보장할 것
 3.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또는 승인 신청 대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국가의 재정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사업대상자의 규모와 지원 기준 및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 사업⁸⁾과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사업⁹⁾을 통해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사무 처리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보험사무대행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¹⁰⁾

Ⅲ. 부대의견

□ 없음

8)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사업(코드: 1083-351)의 내역사업, 2025년 계획액 151억 200만원

9) 산재보험적용부과지원 사업(코드: 4058-351)의 내역사업, 2025년 계획액 173억 8,600만원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⑨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